##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8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위상・임이자・김소희

우재준・최수진・구자근

이인선 · 김미애 · 이달희

조경태 · 서범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확한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3.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⑪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 및 제
	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
	토하고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하천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	<u>해당하는</u>
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	
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u>.</u>
<u>&lt;신 설&gt;</u>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u>&lt;신 설&gt;</u>	<u>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u>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u>&lt;신 설&gt;</u>	3.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u>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